2020. 12. 22.(화)

<화상회의>

-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8대 대의원 -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< 임시대의원회 안건개요 >

○ 통상임금 소송비용(착수금, 기타비용)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

민주노총/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

민주노총 진국공공운수노동조합

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

-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8대 대의원 -

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

Ⅰ. 제18대 대의원회 구성현황

1 활동근거

○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2절(대의원회) 제17,18조

○ 대의원회 당선 공고('20. 3. 13. / 8. 20.)

2 대의원회 구성개요

○ 활동기간 : '20.03.12. ~ '21.01.31. ※제19대대의원 선출공고시까지

○ 활동범위 : 조합규약 제20조(대의원회의 기능)

※제15조 제2항(해산, 위원장·임원 선출 등)을 제외한 총회의 기능

○ 대의원구성

소속(배정인원)	이 름	비 고	소속(배정인원)	이 름	비 고
여성대의원 (1)	이 화 영		대전오월드 (4)	맹 재 영	
혁신기획실 (1)	전 동 혁			김 근 영	
경영지원처 (2)	홍 의 준		환경사업처 (8)	염 기 범	
	차 영 주			김 철 규	
고객지원처 (1)	백 민 호			이 정 현	
도시개발처 (2)	한 상 은			정 종 희	
	이 홍 인			채 양 기	
건설사업처 (2)	정 태 원			박 인 병	
	조 보 람			임 재 현	
대전오월드 (4)	김 용 선			염 상 빈	
	박 중 상				
합 계			총 21명		

※ 소속별 배정인원은 대의원회(2020.01.13.)에서 논의된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

Ⅱ. 임시대의원대회 안건

□ 통상임금 소송비용(착수금, 기타비용)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

[1] 통상임금 소송 추진현황

○ 통상임금소송 진행 대의원대회 승인 ---------- ‘20. 6月

○ 소송액 개략산정 및 관련규정 검토 ---------- ‘20. 7~ 8月

○ 법률자문(공공운수노조 법률원) ---------- ‘20. 9~10月

○ 법률대리인 선임 계약(공공운수노조 법률원) ------ ‘20. 11月

○ 통상임금 소송 소장 접수 ---------- ‘20. 11月

[2] 통상임금 소송 법률대리인 계약사항

○ 법률대리인 :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▶ 상급단체 / 통상임금 소송경험 다수

○ 계 약 일 : ‘20. 11. 25

○ 소송비용

구 분	항목	금액(부가세 포함)	지급기한
착수금	위임사무 착수금	5,500,000원	‘20. 12. 31
기타비용	인지대, 송달료 등 (추가분은 향후 실비정산)	892,000원	‘20. 12. 31
성공보수	전부승소 및 일부승소시 성공보수	승소금액 7.7%	승소시 일괄공제

※ 성공보수는 당초 8.8% 제시되었으나 협상을 통해 7.7%로 하향 조정

[2] 통상임금 소송비용(착수금, 기타비용) 예비비 사용

○ 사용목적 : 소송비용의 개인별 부담금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착수금, 기타비용은 조합비에서 납부 / 개인은 성공보수만 납부

○ 예산현황 : 통상임금 소송비용 예산 미반영

‘20. 12. 31 기한 內 지급을 위해 예비비 사용 필요

○ 예비비 현황 (‘20년 하반기~ ’21년 상반기 예산)

구분	예산현황	사용금액	비고
예비비	12,088,000원	-	

○ 예비비 지급계획

구분	예산현황	소송비용	잔액
예비비	12,088,000원	6,392,000원	5,696,000원

Ⅲ. 기타 현안사항 논의

첨 부 통상임금 소송 계약서

위 임 계 약 서(민사)

사건의 표시 (담당: 조연민 변호사, 임상옥 변호사, 박용원 노무사)

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	대전지방법원 / 임금		계약 유형	①
당 사 자(의뢰인)	조성민 외 265 (원고)	상 대 방	대전도시공사 (피고)	

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 [위임사무] 별지 목록 기재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**제1심** 관련사무 일체의 대리임무(본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수령하는 권한을 포함한다)를 민주노총 법률원(법무법인 여는, 이하 수임인)에 위임한다.

제2조 [착수금] 위임사무의 착수금은 **금 5,500,000원(부가세 포함)**으로 하며, 위임인은 위 착수금을 **2020. 12. 31.**까지 지급한다. 소장 접수 후 소 취하자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3조 [소송비용] 위임사무를 처리를 위한 비용은 위임인이 부담하며, 청구금액 특정 후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대 추가분은 추후 수임인의 청구에 따라 위임인이 납부하기로 한다.

① **인지대: 815,500원**/ ② **송달료: 76,500원**/ ③ 예비: 0원/ ④ 검증 및 감정비: 0원/
⑤ 기타: 원(기타 비용: 증인여비, 기록복사비, 보증공탁금, 집행비용 등)

※ 착수금 총액: 6,392,000원(부가세 포함)

제4조 [자료·정보의 제공의무]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, 관련 자료의 제출, 증인의 확인 등을 위임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, 위임인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며, 사정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.

제5조 [수임인의 의무] ①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수임임무의 진행사항, 재판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나 소송기록 및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,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인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 다만 그에 필요한 비용은 위임인이 부담한다. ②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고,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.

제6조의1 [성공보수] ① 위임사무의 종료 후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다음 구분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한다. 부가가치세 10%는 위임인이 별도로 지급하며, %로 산정할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.

가. **전부승소시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금액의 7.7%에 해당하는 금원, 일부승소시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금액의 7.7%에 해당하는 금원(각 부가세 포함)**

나. 전부승소시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금액의 ____%에 해당하는 금원과 금 ____원
일부승소시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금액의 ____%에 해당하는 금원과 금 ____원

②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, 화해, 소의 취하,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 등 종국판결 이외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임인의 노력의 정도를 감안하고 제1항을 참조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한다.

※ 성공보수 지급시기: ① 해당 심급의 종결 시 ② **최종 확정 시**

제6조의2 [일괄공제 동의] 위임인은 위 성공보수 발생 시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금액을 급여 또는 승소 금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7조 [위임계약의 해지] 수임인이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위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위임인이 이 약정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이 허위인 때에는 수임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 해지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[자료의 보관과 반환] ① 위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제공한 자료는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, 위임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위 자료 반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. 다만 수임인은 그 자료의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고 위임인이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위임인에게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. ② 위임 업무 종료 후 2년간 위임인이 전 1항의 자료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료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제9조 [관할의 합의] 위임계약에 관한 분쟁은 변호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.

제10조[소송비용의 부담] 패소 시 법령에 의해 상대방이 소송비용(변호사비용포함)을 위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제11조[인장 조각] 위임계약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,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※ [별지] 원고별 <통상임금 소송 참가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>

2020. 11. 25.

----->>>>> 팩스, 이메일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작성 즉시 법률원에 팩스로 보내주세요 <<<<<----

위임인 성명 (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명)	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㊞		(주민번호는 기재 X)
노동조합 고유번호	202-82-66661		(있는 경우, 반드시 기재 요망)
주소	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6, 11층(대흥동)		(반드시 기재 요망)
휴대전화	010-6406-1987	유선전화	042)530-9251
E-mail	neamin@dcco.kr	휴대전화(노조 담당자)	010-2334-6191
팩스	042-530-9240	비고	

수임인 민주노총 법률원(법무법인 여는) 대표변호사 권두섭, 송영섭 법무법인 여는 대표변호사

입금하실 곳: 국민은행 406201-01-029603(법무법인 여는) ※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
※ 의뢰인 명의가 아닌 경우, 입금 후 확인 요망 ※ 전화: 02-2635-0419 팩스: 02-2636-4019